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67호 2014년 6월 16일(월)

훈 령

○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속 초 시 장

2014. 6. 16.

속초시 훈령 제 662 호

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

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단서 중 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제5조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신체적 불구 또는 허약자”를 “신체장애
인 또는 심신미약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주벽”을 “술버릇”으로 한다.
제7조제5호 중 “제1호 내지 제4호에서”를 “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 한다.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
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제3조 및 제9조제1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이유

「주민감시요원 위촉기간을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
하고, 위촉 결격사유를 상위법인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
률」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및 변경사항을 정비
하려는 것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감시요원의 자격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 규정에 <u>의거</u>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.	제3조(감시요원의 자격)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 규정에 <u>따라</u>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.
제4조(위촉 등) ①·② (생략) ③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감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/3이상 동의를 받아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	제4조(위촉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감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/3이상 동의를 받아 <u>연임할 수 있다</u> .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원이 될 수 없다. 1. (생략) 2. <u>당해</u>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<u>신체적 불구 또는 허약자</u> 와 전염병 질환자. 3. <u>주벽</u> 이 있거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. 4.·5. (생략)	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원이 될 수 없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해당</u>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<u>신체장애인 또는 심신미약자</u> 와 전염병질환자. 3. <u>술버릇</u> 이 있거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. 4.·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활동범위) 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7조(활동범위) 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~ 4. (생 략)

5.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,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

제8조(감시원 해촉) ① 시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5. (생 략)

6.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협의체에서 감시원의 해촉을 의결하고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확인하고 해촉 및 위촉한다.

제9조(보수 및 수당지급) ① 감시원의 보수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에 의거 지급하며, 일요일 및 절근 일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퇴, 지각시에는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②·③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,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

제8조(감시원 해촉) ① 시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위촉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협의체에서 감시원의 해촉을 의결하고 후임자를 추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해촉 및 위촉한다.

제9조(보수 및 수당지급) ① 감시원의 보수는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하며, 일요일 및 절근 일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퇴, 지각시에는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